

#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789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6. 25. 김석한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4. 7.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7. 17.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 수정가결

### 2. 개정이유

-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에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 입후보자 등록 신청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안 제8조의2제1항)
  - 후보자 사퇴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안 제8조의2제3항)
- 방청의 허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6조)
  - 방청의 허가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첨부 (안 제76조제2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31호
  - 예고기간: 2024. 6. 25.(화) ~ 6. 30.(일)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 5. 본 문: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에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안 제8조2)에서는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안 제76조)에서는 방청의 허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보완하여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7.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8. 토 론: 없음.

## 9. 심사결과: 2024. 7. 17. 수정가결

- 붙 임: 1. 수정안 제안서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3. 수정안 대비표

#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789호 관련
------	--------------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 1. 수정이유

- 규칙안의 내용 중 고성군의회를 찾아오는 방청객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안 제76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방청의 신청 기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주요내용

- 안 제76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76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로 수정함.

##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6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76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로 수정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 규칙안	수 정 안
<p>제76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① <u>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u></p> <p>② <u>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u></p>	<p>제76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u>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u></p>